

201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매뉴얼



201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매뉴얼



목 차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편람 소개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6
<hr/>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의의	6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6
2. 편람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9
<hr/>	
가. 편람제작의 필요성	9
나. 편람 제작의 목적	10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규정 개요	10
<hr/>	
가. 용어의 정의	10
나. 자율준수관리자	11
다. 자율준수전담부서 및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12
라. 자율준수위원회	13

제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편람 소개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미션	공정거래 compliance 준법 경영 체계 도입에 따른 자율준수 문화 확립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compliance가 기업활동의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전 임직원은 compliance 경영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 동참한다.· 공정거래 compliance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통하여 준법 문화를 확립한다.

〈그림 1〉 CP 도입 관련 미션과 목표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

- ①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지칭한다.
- ②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자율준수매뉴얼」 또는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나. CP 구성요소

-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1. 당사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

명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 준수 의지는 인터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된다. 자율 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1.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터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④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

1.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공정거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반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⑤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 실시

1.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2.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⑦ 문서 관리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2. 특히 CP 등급평가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당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대 요소 반영〉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 및 솔선수범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
편람제작 및 배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문서관리체계 구축

〈CP 운영 목표〉

· 구체적 행동강령 표명을 통한 전 임직원 CP 인지 및 이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경영에 따른 예산 및 자원 배분
· 이사회를 통한 자율준수관리 지정 · 자율준수관리자 역할 전파 및 대내외적 표명
· 정기교육 및 수시 교육(임원, 리스크 부서 및 법 위반자, 입문대상자) · 임직원의 교육 요구 반영, 효과적인 운영(요구분석, 효과성 평가)
· 일상업무에 공정거래 행동지침 반영 · 경영 활동 시 유념해야할 공정거래 법령 이해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내부제보 활성화 · 상시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법 위반에 따른 인사제재 · 내부제보 등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
· 문서의 개정 이력 관리 및 버전 관리 · 공정거래 준수 경영 전용 시스템 구축 (인트라넷 등)

2. 편람 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편람 제작의 필요성

편람은 CP 운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법령 및 규정, Dos & Don'ts 구체적 행동지침, 사례 및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므로 전사 자발적인 준법행동을 촉구합니다.

나. 편람 제작의 목적

- ① 편람 제작 계획안 마련 (리스크를 완화시킬 방법 반영)
- ② 각 사업부문별 리스크 범위에 따라 관련 법령 포함 포함
- ③ 산업의 특성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CP운영 기준과 절차가 마련
- ④ CP 운영에 대한 미션과 목표가 수립에 따라 문서로 제정
- ⑤ 법 개정예 따라 CP운영 기준의 수정 및 보완
- ⑥ CP 운영 기준의 수정에 관한 개정이력을 알 수 있도록 수정일자는 명확히 제시
- ⑦ CP 운영 기준 수정 시 수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규대비표 등으로 명확히 표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요

가. 용어의 정의

- ①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공정거래관련법령”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 ③ “경쟁당국”은 공정거래관련법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④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

당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며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⑦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을 보좌하여 소속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⑧ "임직원"은 회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및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⑨ "사전 협의"라 함은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 ⑩ "모니터링"이라 함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자율준수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 임직원들의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⑪ "제재조치"라 함은 회사 임직원들에 의해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회사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⑫ "문서관리"라 함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서에 대하여 보관, 보존,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서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⑬ "포상"이라 함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고객, 관계사 및 협력사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율준수관리자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 1.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 경쟁당국 및 법 관련 정부기관과 커뮤니케이션
4. 자율준수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과 운영
5. 공정거래관련법령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6.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 총괄
7. 자율준수위원회 운영
8.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자문 및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 조치의 강구
9.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자율준수위원회 상정
10.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예산의 승인 권한 및 최고경영진에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예산 요청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청
4.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행위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요청
5.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청
6. 자율준수위원회 개최 소집권
7. 자율준수위원회 운영 및 추진 권한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다. 자율준수전담부서 및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① 자율준수전담부서(담당자) 역할

1. 공정거래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및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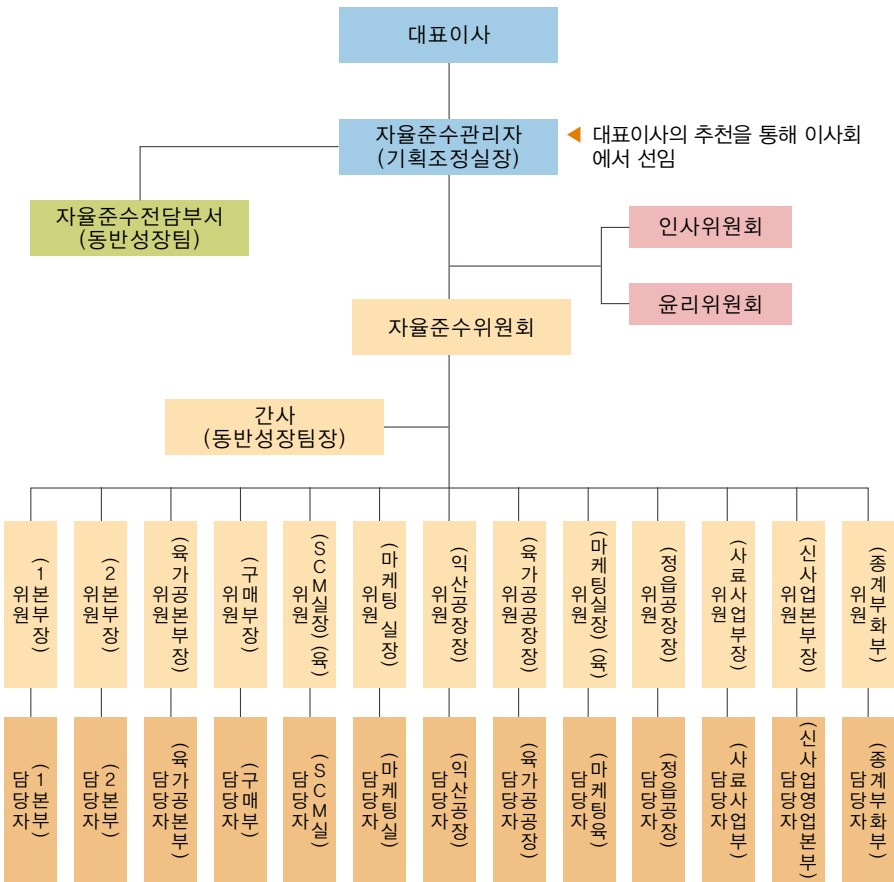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예산 편성
 3. 공정거래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규정(가이드라인)의 작성, 운영, 관리
 4. 제3호의 준수규정(가이드라인) 관련부서에 대해 주지 및 지도
 5. 준법교육 실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관련 홍보
 6.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한 회사 임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7. 회사 내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법 준수 인식도 측정
 8. 공정거래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관행에 대하여 사전 심사 및 위반 사항 확인
 9.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평가 시행
 10.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문서 관리
 11.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실무,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및 지시 사항 수행
- ②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의 직무
1. 공정거래관련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변경 시 각 부서의 제 업무규정 및 업무매뉴얼 등 자체 정비 및 그 이행여부 점검
 2. 자율준수편람 또는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각 부서의 그 위반 여부 점검
 3. 소속 부서 임직원들에 대한 자율준수 교육 및 상담
 4. 공정거래관련법령 및 이 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
 5.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 및 자문 요청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련 내용 기록 및 유지

라. 자율준수위원회

1. 회사 주요사업의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2.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3.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규정, 지침의 제·개정시 협의
4.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 임직원 제재(인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심의·의결
5. 자율준수에 모범적인 임직원 포상에 대한 심의·의결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회부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Compliance 운영체제도



〈그림 3〉 CP 조직도표

제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체크리스트

♣ 일반부당지원행위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자금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부당지원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였는가?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p>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 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앞선 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였는가?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부당지원행위)</p>	<p>언제 한 경우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p>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였는가?
물량 몰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가?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통행세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 대리점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금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 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 상당히 유리한 조건(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가? (안전지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 하도급법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법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인가? ·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가?
입찰공고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 경쟁입찰로 계약체결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 하였는가? · 경쟁입찰로 선정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었는가? ·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발주 및 계약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 하지는 않았는가? · 계약서(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는가? · 계약서에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계약서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 내지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발주 및 계약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등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서면 보관		· 하도급 관련 서류(검수, 반품, 대금결정 등)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
특약 검토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가? ·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 ·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 ·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
대금 결정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 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대금 결정	<p>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토록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단가결정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가? · 다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미치는 발주를 하였는가? ·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 · 수의 계약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p>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연하였는가? ·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통보한 적이 있는가? ·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부당반품	<p>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 ·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검사	<p>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 나가기 전에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였는가? ·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가? ·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 ·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처리하였는가? ·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하였는가? · 수출할 물품제작을 의뢰한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검사	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시기)	는가? · 물품수량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였는가?
하도급 대금 감액	하도급법 11조 (감액금지)	·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 한후,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하였는가?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인하였는가? ·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켰는가? ·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 인하시유와 기준을 해당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였는가?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해서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대금 지급	<p>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 한 경우, 어음할인로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 하였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이행을 위해 하자이행증 권과 별개로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고 있는가? ·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 여부에 대하여 협의없이 상계처리하였는가? · 대금지급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	<p>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재료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하였는가? ·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시 10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30일 이내에 협의회가 이루어졌는가?
기술자료 요구	<p>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 · 기술자료 요구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 기술자료 요구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는가? ·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가? · 세부적 원가자료 요구 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기술자료 유용	<p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협력업체나 계열사에 제공하였는가? ·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였는가?
사급자재 및 장비	<p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법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가? · 당사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 한 후, 당사 납품분에 대해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였는가?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 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 ·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였는가? ·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반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였는가? ·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 ·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

♣ 대리점법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발주 및 계약	대리점법 제5조 (대리점 거래 계약서 작성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시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 계약서 없이 선 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 하지는 않았는가? · 계약서 작성시 대리점의 서명을 받았는가? · 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계약서 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서면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서류(계약서 등)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
구입강제	대리점법 제6조 (구입강제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있는 재고 정리를 위해 주문이 없는데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한 경우가 있는가?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하였는가?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가? · 대리점에게 과대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할당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 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대리점이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대리점의 동의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구입강제	대리점법 제6조 (구입강제행위 금지)	<p>제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이익제공 강요	대리점법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대리점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 대리점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 대리점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대리점업자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대리점업자에게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켰는가? · 자기의 연구비용, 직원 야유회 비용 등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킨 경우가 있는가?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판매목표	대리점법 제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업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 대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 대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대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대대리점이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하여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한 경우가 있는가? · 대판촉을 위한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불이익제공	대리점법 제9조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가?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추후 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판매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불이익제공	대리점법 제9조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판매점의 부담 시킨 경우가 있는가?
경영활동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주문내역 확인	대리점법 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을 본사에서 수정한 적이 있는가? · 대리점이 주문내역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있는가?
보복조치	대리점법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이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 ·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

♣ 대리점법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가격협의를	공정거래법 제19조 (공동행위금지)	·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조절		·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 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입찰	공정거래법 제19조 (공동행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상대방과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의약품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 경쟁업체 모임 시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 경쟁사 모임 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였는가?
문서 작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통해 가격 등을 결정한 경우, 관련 내용이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협력”이나 “공동으로”문구가 적시되었는가? ·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

